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 특약

제1조(약관의 적용)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 거래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신거래기본약관」, 「거치식예금약관」, 「발행어음 약관」을 적용한다.

제2조(구성상품)

발행어음으로 한다.

제3조(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으로 한다.

제4조(계약기간)

- ① 이 예금의 계약기간(만기)은 3개월, 6개월, 9개월, 1년으로 한다. 다만, 자산관리기관과 회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1년 이내에서 별도 정할 수 있다.
- ②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이 만기일이 된다. 다만, 자산관리기관이 공휴일의 직전영업일에 해지요청 시에는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약정이자율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앞당김 일수에 대한 이자를 차감한다.
- ③ 만기가 도래한 계약은 그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자동 재예치하며, 만기일의 직전 영업일까지 자산관리기관의 별도 지급요청이 있는 경우 만기상환을 할 수 있다.

제5조(가입금액)

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이율의 적용)

- ① 이 예금의 적용이율은 신규일(재예치일) 현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한다.

- ② 이 예금의 중도해지 시 분할인출로 남은 잔여원금에 대해서는 신규일(재예치일) 적용된 이자율 및 만기일을 그대로 적용한다.

제7조(이자지급 방식)

이 예금의 이자지급은 만기일시 지급한다.

제8조(중도해지)

- ① 이 예금은 분할인출 횟수 제한 없이 중도해지가 가능하며, 신규일(재예치일)로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신규일(재예치일) 고시된 일반 정기예금(발행어음) 기본이자율의 50%를 적용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퇴직연금제도에서 인정하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에 의해 중도해지 하는 경우에는 신규일(재예치일) 당시 결정된 퇴직연금 정기예금(발행어음)의 약정이자율을 적용한다.
1. 퇴직급여지급 또는 연금지급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2. 퇴직연금의 중도인출 사유
 - 가.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나.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다.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 라.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 마.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바.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3. 퇴직연금의 계약해지 사유
 - 가.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합병, 영업양도로 인하여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나.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장의 파산 또는 폐업

다. 관련법령으로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라. 수탁자의 사임

마. 가입자의 사망

4.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계약이전

5. 자산관리기관 기준 동일 사업자 내 제도전환

6. 수수료의 징수

제9조(기타)

- ① 이 예금은 퇴직연금제도 범위 내에서 운용되는 상품으로 질권설정 및 담보제공(관련 법령에서 허용하는 사유인 경우 가능), 지급정지, 상계 등이 불가하다.
- ② 이 예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중 자산관리기관의 퇴직연금 운용지시에 의해 업무처리가 이루어지며, 통장은 발행하지 않는다.